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맹점주 단체 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29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9. 10.
- (3)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 및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보복조치의 유형으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 ----- ----- ----- ----- ----- ----- ----- ----- ----- -----.
<신설>	1.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 및 활동
1. ~ 3. (생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④ (생략)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맹본부는 <u>가맹점사업자단</u>	⑤ ----- <u>가맹계약을 체</u>

현행	개정안
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하는 경우----- ----- ----- ----- 하여서는----- ---

□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협조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1)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

□ 개정안은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보복조치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행하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로부터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행법에서도 이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³⁾.

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이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난 1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함(2024. 1. 1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적대적인 점주단체와는 대화 안한다.”)

○ 개정안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 등 보복조치 금지를 제12조의5에 규정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벌칙 규정이 추가로 적용됨. 이는 현재보다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가맹점사업자 보호도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실손보상의 예외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들도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도 가맹사업법과 동일한 유형에 한하여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타 법률에서의 보복조치 금지 유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 분쟁조정 신청 - 위반행위의 신고 -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또는 분쟁조정 신청 - 위반행위의 신고 - 관계기관 조사에 대한 협조 - 공정위의 서면실태 조사에 대한 협조	- 분쟁조정의 신청 - 위반행위의 신고 -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 공정위의 서면실태 조사에 대한 협조	- 분쟁조정 신청 - 위반행위의 신고 -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 공정위의 서면실태 조사에 대한 협조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규정이 이미 가맹사업법에 존재하고,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⁴⁾을 고려할 때 현행 조치 수준만으로도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 가능하여 이를 신설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4) 제14조의2제5항이 신설된 이래('13.8~)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조항 위반을 이유로 조치한 사례는 4건임